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5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을 추가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학교수목원으로 구분되고, 2023년말 기준 7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전시 등의 기능 외에도 교육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제적으로도 수목원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 따르면 식물원(수목원)을 ‘연구, 보전,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이력 관리된 식물 컬렉션을 보유·관

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 규정에 교육을 포함하고 수목원의 교육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를 수목유전자원을 교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수정하는 등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도 박물관·미술관의 사업 범위에 수집·전시 외에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

나. 국·공립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의 단축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최대 8년간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재해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산지 전용,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토지매입비 예산확보·협의매수·수용재결 등 토지보상 절차에만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최대 8년의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 제한의 장기화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현재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른 규정이 기존의 수목원조성예정지에도 적용되도록 소급효로 규정할지, 장래효로 규정할지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발행위, 건축 등을 제한 구역과 관련한 유사입법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건축법」 제18조, 「소하천정비법」 제4조 등이 있음.

다.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폐지

개정안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삭제).

현행법 제17조는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변경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수목원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23조의2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시정요구 등에 관한 규제는 수목원 운영자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규제로서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5년 이후 2024년 12월 현재까지 해당 규제에 대하여 세 차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모두 ‘규제 존속’으로 의결하였는바(2017년, 2020년, 2023년), 동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미흡해 보이며,

규제개혁위원회도 산림청에 동 제도의 폐지를 통보한 바 있음(2023. 10.13.).

이에 개정안은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